



시 보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namwon.go.kr

제75호 2022. 12. 01(목)

선 람	기관의 장

공 고

- 남원시 공고 제2022-2338호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----- 1
- 남원시 공고 제2022-2339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-----22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남원시 공고 제2022 - 2338호

「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1월 30일

남 원 시 장

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장기남원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효율적인 행정기구 조직체제로 개편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국 단위 명칭 변경(안 제5조, 안 제6조, 안 제6조의2)

- 자치행정국→행정복지국으로 변경
- 경제농정국→문화농산업정책국으로 변경
- 안전건설국→도시안전국으로 변경

나. 실 단위 개편 (안 제4조)

- 1) 기획홍보실 신설 (안 제4조제2항)
- 2) 전략분석실 신설 (안 제4조제3항)
 - 국가 및 도 정책분석을 통한 국가예산 발굴, 투자 및 기관 유치
- 3) 시민소통실을 열린소통실로 개편함 (안 제4조제5항)

다. 국 단위 부서 개편(안 제5조, 안 제6조, 안 제6조의2)

- 1) 행정복지국: 자치행정과, 정보화정책과, 교육체육과, 주민복지과, 통합돌봄과, 가정복지과, 열린민원과, 재정과
 - 2) 문화산업정책국: 신성장산업과, 문화정책과, 관광기반과, 경제정책과, 농업정책과, 농업육성과, 농촌활력과, 축산정책과
 - 3) 도시안전국: 도시정책과, 시민안전과, 도로교통과, 산림녹지과, 환경과, 건축과
- 라. 사업소 단위 개편 (안 제15조)
- 시설사업소, 환경사업소, 상수도사업소

3. 입법예고기간 : 2022. 11. 30. ~ 12. 01.

4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0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 : 행정지원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 제출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(우) 55738 /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, 남원시청 행정지원과

라. 의견 제출 방법 : 서면, 이메일(ssapssarum@korea.kr), 직접방문

5. 기 타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행정지원과(☎063-620-607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6.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: 붙임

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: 2022. 12. .

제 출 자: 남 원 시 장

제안설명자: 행정지원과장

1. 개정이유

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장기남원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효율적인 행정기구 조직체계로 개편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국 단위 명칭 변경 (안 제3조)

- 자치행정국→행정복지국으로 변경
- 경제농정국→문화농산업정책국으로 변경
- 안전건설국→도시안전국으로 변경

나. 실 단위 개편 (안 제4조)

- 1) 기획홍보실 신설
- 2) 전략분석실 신설
 - 국가 및 도 정책분석을 통한 국가예산 발굴, 투자 및 기관 유치
- 3) 시민소통실을 열린소통실로 개편함

다. 국 단위 부서 개편 (안 제5조, 안 제6조, 안 제6조의2)

- 1) 행정복지국: 자치행정과, 정보화정책과, 교육체육과, 주민복지과, 통합돌봄과, 가정복지과, 열린민원과, 재정과
- 2) 문화농산업정책국: 신성장산업과, 문화정책과, 관광기반과, 경제정책과, 농업정책과, 농업육성과, 농촌활력과, 축산정책과
- 3) 도시안전국 : 도시정책과, 시민안전과, 도로교통과, 산림녹지과, 환경과, 건축과

라. 사업소 명칭변경 (안 제15조)

- 관광시설사업소→시설사업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: 2022. 11. 30. ~ 2022. 12. 01. (2일간)

- 결 과:

2) 비용추계서: 비 추계대상

3) 규제예비심사: 비 심사대상

4) 성별영향평가: 해당 없음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자치행정국, 경제농정국, 안전건설국”을 “행정복지국, 문화농산업정책국, 도시안전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기획실, 감사실, 시민소통실”을 “기획홍보실, 전략분석실, 감사실, 열린소통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획실장”을 “기획홍보실장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,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정부합동평가 및 성과관리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
12. 통계에 관한 사항
13.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
14. 시정의 홍보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

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“전략분석실”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중앙행정기관, 입법기관, 전라북도와의 업무연락 및 정보수집, 국가 및 광역 예산 확보 전략에 관한 사항
2. 국정 및 도정 정책분석을 통한 정책전략 수립
3. 기업 및 기관,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

4. 기업 등 투자유치 규제애로 해결에 관한 사항

제4조제4항(종전의 제4조제3항) 중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

제4조제5항(종전의 제4조제4항) 중 “시민소통실장”을 “열린소통실장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직소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

2. 생활민원 상담에 관한 사항

3. 소규모 주민숙원사업(사업집행, 설계 및 감독)에 관한 사항

4. 국내·외 교류에 관한 사항

제5조의 제목 “(자치행정국에 두는 과)”를 “(행정복지국에 두는 과)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행정복지국에 자치행정과, 정보화정책과, 교육체육과, 주민복지과, 통합돌봄과, 가정복지과, 열린민원과, 재정과를 둔다.

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치행정국장”을 “행정복지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, 제8호, 제9호, 제13조, 제15조, 제16호, 제17호, 제18호, 제19호, 제20호, 제21호를 삭제하고, 같은항 제4호, 제6호, 제12호,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인사·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

6. 노조업무에 관한 사항

12. 민원의 종합기획 및 조정, 주민등록·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

26.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

37. 장학숙 운영 등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

제6조의 제목 “(경제농정국에 두는 과)”를 “(문화농산업정책국에 두는 과)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문화농산업정책국에 신성장산업과, 문화정책과, 관광기반과, 경제정책과, 농업정책과, 농업육성과, 농촌활력과, 축산정책과를 둔다.

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경제농정국장”을 “문화농산업정책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4호 및 제25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드론 등 항공산업 육성
2. 전략산업, 중소기업 육성 및 농공단지조성·관리에 관한 사항
3.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
4. 국악의 보존 및 계승 발전에 관한 사항
5. 공연장 및 음반, 비디오물 유통·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
6. 노래연습장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
7. 관광지조성·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등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
8. 관광홍보 및 관광홍보물 제작 배부에 관한 사항
9. 백두대간 생태교육전시관 및 관련시설 운영관리
10. 허브테마파크·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
11. 경제정책·상정·물가관리·노정업무에 관한 사항
12. 시민활동 중간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
13. 농업정책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

- 14. 농지관리 및 농촌정주권 사업에 관한 사항
- 15. 농·특산물 등 지역생산품에 대한 판로개척에 대한 사항
- 16. 농업기반 조성 및 농업용수에 관한 사항
- 17. 농업생산 및 농업자재 공급·양정·특작·원예에 관한 사항
- 18. 축산 및 수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

제6조의2의 제목 “(안전건설국에 두는 과)”를 “(도시안전국에 두는 과)”로 한다.
 제6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도시안전국에 도시정책과, 시민안전과, 도로교통과, 산림녹지과, 환경과, 건축과를 둔다.

제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안전건설국장”을 “도시안전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5호,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5. 산림보호·조성 및 가로조경에 관한 사항
- 16.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지원

제9조제1항 중 “「지역보건법」 제9조”를 “「지역보건법」 제11조”로 한다.

제15조제1호의 ‘관광시설사업소’를 ‘시설사업소’로 하고, 같은 호 가목부터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가. 광한루원 및 권역시설물 운영관리
- 나. 천문대 시설물 사용과 이용에 관한 사항
- 다. 춘향테마파크 시설물 사용과 이용에 관한 사항
- 라. 남원예촌 및 주변 시설물 운영관리
- 마. 남원관광지, 교룡산 시설물 운영관리
- 바. 미술관 및 연계시설, 문학관, 박물관, 춘향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

사. 소관 시설 관람료, 이용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조례는 공포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인사발령 시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2]

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

사업소명	위 치	비 고
시설사업소	남원시 요천로 1447	
환경사업소	남원시 주생면 요천로 1036-207	
상수도사업소	남원시 오들1길 56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국의 설치)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<u>자치행정국, 경제농정국, 안전건설국</u>을 둔다.</p> <p>제4조(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·보좌기관의 설치) ① 부시장 밑에 <u>기획실, 감사실, 시민소통실</u>을 둔다.</p> <p>② <u>기획실장</u>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삭 제</p> <p>7. <u>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연락 및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</u></p> <p>8. 삭 제</p> <p>9. <u>농·특산물 등 지역생산품에 대한 판로개척센터 역할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0. <u>장학숙 운영 등 지원 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3조(국의 설치) ----- ----- <u>행정복지국, 문화농산업정책국, 도시안전국</u>-----.</p> <p>제4조(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·보좌기관의 설치) ① ----- -- <u>기획홍보실, 전략분석실, 감사실, 열린소통실</u>----- --.</p> <p>② <u>기획홍보실장</u>----- 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삭 제></p> <p>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<삭 제></p> <p>10. <삭 제></p> <p>11. <u>정부합동평가 및 성과관리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2. <u>통계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3. <u>공보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③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각종 감사업무 및 공사 등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. <삭 제> 3.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4. <u>정부합동평가 및 성과관리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</u> 5. <u>통계에 관한 사항</u> 6. 자치법규 심사·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에 관한 사항 	<p><u>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4. <u>시정의 홍보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</u></p> <p>③ <u>전략분석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중앙행정기관, 입법기관, 전라북도와의 업무연락 및 정보수집, 국가 및 광역예산 확보 전략에 관한 사항</u> 2. <u>국정 및 도정 정책분석을 통한 정책전략 수립</u> 3. <u>기업 및 기관,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</u> 4. <u>기업 등 투자유치 규제애로 해결에 관한 사항</u> <p>④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동일) 2. (현행과 동일) 3. (현행과 동일) 4. <삭 제> 5. <삭 제> 6. (현행과 동일)

현 행	개 정 안
<p>7.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</p> <p><신 설></p> <p>④ <u>시민소통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u></p> <p>1. <u>시민활동 중간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 <u>직소민원실·신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<u>생활민원 상담에 관한 사항</u></p> <p>4. <u>소규모 주민숙원사업(사업집행, 설계 및 감독)에 관한 사항</u></p> <p>제5조(자치행정국에 두는 과) ① <u>자치행정국에 행정지원과, 홍보전산과, 민원과, 문화예술과, 관광과, 교육체육과, 주민복지과, 노인장애인과, 여성가족과, 재정과를 둔다.</u></p> <p>② <u>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u></p> <p>1.·2. (생 략)</p> <p>3. <u>국내교류에 관한 사항</u></p> <p>4. <u>공무원 인사·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</u></p> <p>5. (생 략)</p>	<p>7. (현행과 동일)</p> <p>8. <u>규제개혁에 관한 사항</u></p> <p>⑤ <u>열린소통실장-----</u> -----.</p> <p>1. <u>직소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 <u>생활민원 상담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<u>소규모 주민숙원사업(사업집행, 설계 및 감독)에 관한 사항</u></p> <p>4. <u>국내·외 교류에 관한 사항</u></p> <p>제5조(행정복지국에 두는 과) ① <u>행정복지국에 자치행정과, 정보화정책과, 교육체육과, 주민복지과, 통합돌봄과, 가정복지과, 열린민원과, 재정과를 둔다.</u></p> <p>② <u>행정복지국장-----</u>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삭 제></p> <p>4. <u>인사·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</u>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6. <u>공무원 노조업무에 관한 사항</u>	6. <u>노조업무에 관한 사항</u>
7. (생략)	7. (현행과 같음)
8. <u>공보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에 관한 사항</u>	8. <삭제>
9. <u>시정의 홍보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</u>	9. <삭제>
10. ~ 11. (생략)	10. ~ 11. (현행과 같음)
12. <u>가족관계등록·어디서나 증명 발급·신원증명원·제증명 등 민 원처리에 관한 사항</u>	12. <u>민원의 종합기획 및 조정, 주 민등록·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</u>
13. <u>외국인 등록 및 여권발급에 관한 사항</u>	13. <삭제>
14. (생략)	14. (현행과 같음)
15. <u>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재 관 리에 관한 사항</u>	15. <삭제>
16. <u>공연장 및 음반·비디오물 유통·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</u>	16. <삭제>
17. <u>노래연습장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</u>	17. <삭제>
18. <u>관광지조성·관광종합개발계 획 수립 등 관광진흥에 관한 사 항</u>	18. <삭제>
19. <u>관광홍보 및 관광홍보물 제작 배부에 관한 사항</u>	19. <삭제>
20. <u>국악의 보존 및 계승 발전에 관한 사항</u>	20. <삭제>

현 행	개 정 안
<p>21. <u>혼불문학관 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2. ~ 25. (생략)</p> <p>26. <u>여성문화센터 운영계획 수립</u></p> <p>27. ~ 36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21. <삭제></p> <p>22. ~ 25. (현행과 같음)</p> <p>26. <u>평생학습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7. ~ 36. (현행과 같음)</p> <p>37. <u>장학숙 운영 등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
<p>제6조(경제농정국에 두는 과) ① <u>경제농정국에 일자리경제과, 기업지원과, 농정과, 농촌활력과, 원예산업과, 축산과, 산림녹지과를 둔다.</u></p>	<p>제6조(문화농산업정책국에 두는 과) ① <u>문화농산업정책국에 신성장산업과, 문화정책과, 관광기반과, 경제정책과, 농업정책과, 농업육성과, 농촌활력과, 축산정책과를 둔다.</u></p>
<p>② <u>경제농정국장</u>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	<p>② <u>문화농산업정책국장</u>----- -----.</p>
<p><신설></p>	<p>1. <u>드론 등 항공산업 육성</u></p>
<p>2. <u>기업·투자유치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<u>전략산업, 중소기업 육성 및 농공단지조성·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	<p>2. <삭제></p> <p>2. <u>전략산업, 중소기업 육성 및 농공단지조성·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
<p><u><신설></u></p>	<p>3. <u>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
<p><u><신설></u></p>	<p>4. <u>국악의 보존 및 계승 발전에 관한 사항</u></p>
<p><u><신설></u></p>	<p>5. <u>공연장 및 음반, 비디오물 유통·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12. 허브테마파크·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</p> <p>1. 경제정책·상정·물가관리·노정업무에 관한 사항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4. 농업정책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</p> <p>5. 농지관리 및 농촌정주권 사업에 관한 사항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6. 농업기반 조성 및 농업용수에 관한 사항</p> <p>7. 농업생산 및 농업자재 공급·양정·특작·원예·잠업에 관</p>	<p>6. <u>노래연습장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7. <u>관광지조성·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등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</u></p> <p>8. <u>관광홍보 및 관광홍보물 제작 배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9. <u>백두대간 생태교육전시관 및 관련시설 운영관리</u></p> <p>10. <u>허브테마파크·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·운영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1. <u>경제정책·상정·물가관리·노정업무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2. <u>시민활동 중간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3. <u>농업정책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4. <u>농지관리 및 농촌정주권 사업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5. <u>농·특산물 등 지역생산품에 대한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6. <u>농업기반 조성 및 농업용수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7. <u>농업생산 및 농업자재 공급·양정·특작·원예·잠업에 관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한 사항</p> <p>8. <u>축산 및 수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</u></p> <p>9. <u>산림보호·조성 및 가로조경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0. · 11. <u>삭 제</u></p> <p>13. ~ 23. <u>삭 제</u></p> <p>24. <u>허브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5. <u>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지원</u></p> <p>제6조의2(<u>안전건설국에 두는 과</u>)</p> <p>① <u>안전건설국에 도시과, 건설과, 안전재난과, 환경과, 교통과, 건축과를 둔다.</u></p> <p>② <u>안전건설국장</u>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14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3장 직속기관</p> <p>제1절 보건소</p> <p>제9조(소관사무) ① <u>보건소장·보건지소장은 「지역보건법」 제9</u></p>	<p>한 사항</p> <p>18. <u>축산 및 수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</u></p> <p>9. <u><삭 제></u></p> <p>10. ·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3. · 23. (현행과 같음)</p> <p>24. <u><삭 제></u></p> <p>25. <u><삭 제></u></p> <p>제6조의2(<u>도시안전국에 두는 과</u>)</p> <p>① <u>도시안전국에 도시정책과, 시민안전과, 도로교통과, 산림녹지과, 환경과, 건축과를 둔다.</u></p> <p>② <u>도시안전국장</u>----- -----.</p> <p>1. ~ 14. (현행과 같음)</p> <p>15. <u>산림보호·조성 및 가로조경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6. <u>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지원</u></p> <p>(현행과 동일)</p> <p>(현행과 동일)</p> <p>제9조(소관사무) ① <u>보건소장·보건지소장은 「지역보건법」 제11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 4장 사업소</p> <p>1. <u>관광시설사업소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사. 천문대 시설물 사용과 이용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마. 춘향테마파크 시설물 사용과 이용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다. 관람료, 이용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</u></p>	<p><u>조</u>-----</p> <p>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(현행과 동일)</p> <p>1. <u>시설사업소</u></p> <p><u>가. 광한루원 및 권역시설물 운영관리</u></p> <p><u>나. 천문대 시설물 사용과 이용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다. 춘향테마파크 시설물 사용과 이용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라. 남원예촌 및 주변 시설물 운영관리</u></p> <p><u>마. 남원관광지, 교룡산 시설물 운영관리</u></p> <p><u>바. 미술관 및 연계시설, 문학관, 도예관, 춘향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</u></p> <p><u>사. 소관 시설물 관람료, 이용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</u></p>

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

◇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「남원시 의안의
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**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**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2호

제3조(작성대상)

-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 -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 - 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 -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
단,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
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 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

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
자치법규 명

2. 제출자

성명(명칭)

주 소

3. 의 견

4. 기 타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2년 월 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 :

성 명 :

(서명 또는 인)

전 화 :

남원시장 귀하

비 고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남원시 공고 제2022 - 2339호

「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1월 30일
남 원 시 장

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남원시 조직정비안 마련에 따라 시정추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 정원 (안 제2조제1호 및 같은조제2호)

- 1) 총 정원 : 1,167명 → 1,170명 (증 3명)
- 2) 집행기관의 정원: 1,137명 → 1,140명 (증 3명)

나.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(안 별표3)

- 1) 총 계: 1,167명 → 1,170명 (증 3)
- 2) 일반직 계: 1,117명 → 1,119명 (증 2명)
- 3) 별정직 계: 1명 → 2명 (증1)

3. 입법예고기간 : 2022. 11. 30. ~ 2022. 12. 01.

4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0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 : 행정지원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 제출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(우) 55738 /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, 남원시청 행정지원과

라. 의견 제출 방법 : 서면, 이메일(ssapssarum@korea.kr), 직접방문

5. 기 타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행정지원과(☎063-620-607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6.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: 붙임

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: 2022. 12. .
 제출자: 남원시장
 제안설명자: 행정지원과장

1. 개정이유

남원시 조직정비안 마련에 따라 시정추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
 필요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 정원 (안 제2조)
 - 1) 총 정원 : 1,167명 → 1,170명 (증 3명)
 - 2) 집행기관의 정원: 1,137명 → 1,140명 (증 3명)
- 나.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(안 별표 3)
 - 1) 총 계: 1,167명 → 1,170명 (증 3명)
 - 2) 일반직 계: 1,117명 → 1,119명 (증 2명)
 - 3) 별정직 계: 1명 → 2명 (증 1명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- 나. 그 밖의 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기간: 2022. 11. 30. ~ 2022. 12. 01.
 - 결과:
 - 2) 비용추계서: 첨부
 - 3) 규제예비심사: 비 심사대상
 - 4) 성별영향평가: 해당 없음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1,167명”을 “1,17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1,137명”을 “1,140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조례는 공포 이후에 최초로 인사 발령하는 날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3]

남원시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

(단위: 명)

구 분	총 계	본 청	의 회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동
총 계	1,170	-				
정무직 계	1					
시 장	1	1				
일반직 계	1,119	-				
4급	6	4	1	1		
5급	57	26	2	3	3	23
6급 이하 계	1,056	-				
별정직 계	2	-				
6급 상당	1	-				
7급 이하	1	-				
연구직 계	4	-				
연구사	4	-				
지도직 계	44	-				
지도관	3			3		
지도사	41	-			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남원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총정원: <u>1,167명</u></p> <p>2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137명</u></p> <p>3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: <u>1,170명</u></p> <p>2. -----: <u>1,140명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

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재정수반요인 : 정원 확대에 따른 인건비 발생분
- 관련조문 :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

2. 비용 추계결과

- 비용추계의 전제 : 인건비 소요분
 - 2022년 인건비 34백만원 × 3명
- 연도별 예산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	연도					합계
	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
세출	인건비	101	103	104	106	108	522

※ 연도별 예산 보수 인상을 1.7% 적용

3. 재원 조달 방안

- 재원조달계획 : 522백만원(기준인건비 내)

4. 그 밖의 사항

- 부대의견 : 행정안전부 연도별 기준인건비 책정·통보
- 작성자 : 행정지원과장 곽주영

<연도별 비용 추계표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	계
세 입		101,502	103,227	104,982	106,767	108,582	525,060
지방세		101,502	103,227	104,982	106,767	108,582	525,060
의존재원							
세 출		101,502	103,227	104,982	106,767	108,582	525,060
인건비		101,502	103,227	104,982	106,767	108,582	525,060
재원 조달		101,502	103,227	104,982	106,767	108,582	525,060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101,502	103,227	104,982	106,767	108,582	525,060
자체 수입	소 계						
	지방세						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

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
자치법규 명

2. 제출자

성명(명칭)

주 소

3. 의 견

4. 기 타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2년 월 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 :

성 명 :

(서명 또는 인)

전 화 :

남원시장 귀하

비 고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